

Tax News Flash

- Transfer Pricing & Customs

October 21, 2024

삼성 KPMG TAX 6 본부는 글로벌 이전가격 이슈를 공유하고자 KPMG 에서 발간되는 TaxNewsFlash 발간물 및 Bloomberg 에서 발간되는 BNA Report 를 한국어로 요약하여 월 2 회 제공합니다. 밑줄 친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OECD 발표자료 및 국제조세/관세 관련 이슈사항 및 동향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 설명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Key Contacts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1 이전가격

최근 글로벌 이전가격 과세동향

전 세계 과세당국이 이전가격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있고, 캐나다, 그리스, 한국, 네덜란드, 페루, 미국 등 주요 과세당국의 최근 과세동향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캐나다: 캐나다 국세청(CRA)은 정부가 캐나다 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에게 지급한 보조금이 이전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CRA 는 이러한 정부 보조금이 독립적인 제 3 자 간의 일반 관행으로 입증되지 않는 한, 납세자의 과세소득을 줄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조사는 기술 및 제조업 분야에서 특히 COVID-19 구호조치와 관련하여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납세자는 수령한 보조금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문서를 구비하고, 이를 근거로 과세당국과 분쟁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논의 및 협력의무의 이행이 중요합니다.

그리스: 그리스 국세청(IAPR)은 최근 이전가격 과세권을 강화하고 있고, 특히 현지화 된 경제분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근 조사사례에서 IAPR 은 납세자자가 분석한 경제분석 자체를 부인하거나 인정하더라도 IAPR 이 산정한 경제분석과 주요 차이점을 비교하여 과세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IAPR 의 공격적인 조사를 대비하여

해외법인의 이익수준에 대하여 면밀한 이전가격 관리가 필요합니다. 감사에 대비하기 위해 운영 비율을 면밀히 분석할 것을 권장합니다.

한국: 한국의 국세청(NTS)은 해외법인의 적정 이익수준에 대한 이전가격 조사를 강화했으며, 이는 중국의 이전가격 과세 추세와 유사합니다. 한국 기업의 중국자회사의 이익수준이 경제분석결과 비교가능회사의 이익수준과 비교할 때, 특정 사업연도의 이익수준이 정상가격범위를 초과하였고, 이러한 경우 이전가격 과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해외법인의 연도별 이익수준의 변동이 매우 높은 경우 APA 실무에서 수용되고 있는 다년도 분석 방식이 간혹 NTS 조사과정에서도 수용되는 경우도 있고, 기업입장에서 불가피한 경우 조사단계에서 다년도 분석 방식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덜란드: 최근 네덜란드 세무청(NTA)의 조사에서 지적재산에 대한 무형자산 이전가격세제의 준수여부에 대한 검증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사례로는, NTA가 납세자의 무형자산 소유권자의 경제적 실체를 문제 삼았으며, 이와 관련해서 납세자 입장에서 무형자산 소유권자의 실질 기능, 부담위험 등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이전가격 문서화의 구비가 중요했습니다.

페루: 페루에서는 OECD 가이드라인에 따른 그룹 간 서비스에 대해 조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페루의 전력회사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과세당국이 그룹 내 서비스의 효익을 입증하기 위한 엄격한 요청했지만 납세자가 이와 관련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함으로써 용역대가의 손금처리가 부인되었습니다. 그룹 서비스 대가에 대한 손금처리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과세당국이 요청하는 증거자료로 조사대응이 어려운 만큼 기업들은 그룹 간 서비스 조직, 인력, 수행역할 등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이전가격 문서화를 사전에 구비하고 이를 근거로 초도 대응하되, 필요시 관련된 증거자료 sample을 제시하는 방안으로 조사를 대응하는 방안을 권장합니다.

미국: 미국 국세청(IRS)은 그룹 간 자금대여의 이자율에 대한 정상가격 준수 여부에 대한 검증 및 관련된 가산세 부과에 대한 집중적인 검토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금대여의 분류와 면책규정 이자율에 따른 조정에 대한 복잡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관계사간 자금거래에 대한 이전가격 과세위험을 줄이고, 관련된 가산세부과 위험을 줄이기 위해 사전에 이전가격 문서화 구비를 권장합니다.

KPMG 의견

최근 글로벌 이전가격 과세사례에서 보듯이, 정부 보조금을 사용하는 기업은 적정 과세소득의 신고와 관련해서 과세당국의 세무조사 위험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룹 내 서비스와 무형자산 거래에 대한 이전가격 문서는 철저히 준비되어야 하며, 글로벌 과세당국이 이전가격 문서화 및 관련된 증거자료를 점점 더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IRS를 포함한 세무 당국은 관계사간 자금거래의 이자율에 더 집중하고 있으며, 공제 가능성과 비용 배분에 대한 의문 제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산세 부과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세 추이는 계속되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업은 최근 과세동향을 이해하고 이에 맞는 이전가격 위험관리가 중요합니다. 글로벌 이전가격 정책을 준수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소명할 수 있도록 이전가격 문서화의 사전 구비가 중요합니다.

이탈리아: 국가별 보고서 시행

2024년 9월 12일, 이탈리아는 EU 공개 국가별 보고서(CbC) 지침을 이탈리아 법으로 시행하는 법령을 발표하였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탈리아 법안의 조항은 EU 공개 국가별 보고서(CbC) 지침의 내용과 대체로 일치합니다.
- 이탈리아는 "안전 장치 조항"을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이 조항은 해당 그룹이 공개할 경우 기업에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를 최대 5년까지 일시적으로 생략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생략 사유를 정당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또한, 이탈리아는 국가별 보고서를 이미 EU 내 제3자에게 무료로 공개하고 있는 경우 기업이 자사 웹사이트에 국가별 보고서를 게시하지 않아도 되는 웹사이트 게시 면제 조항을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회사 경영진에 대한 행정적 벌칙이 부과됩니다. 이 제재는 10,000유로에서 50,000유로 사이이며, 기존 마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보고서를 게시할 경우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나 보고서에 중대한 허위 정보가 포함되거나 중요한 사실이 누락된 경우에는 벌금이 두 배로 증가합니다.

새로운 조항은 2024년 6월 22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 연도에 적용됩니다.

02 국제조세

최신예규/판례: 조심 2023 서 8283 (2024.03.25)

제목: 처분청의 재조사를 통하여 청구법인과 비교대상법인의 매출액 대비 판매비·관리비 중 그 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항목에 대한 조정을 통해 청구법인과 비교대상법인 간 기능상 차이가 합리적으로 조정되어 정상가격이 산정된 것으로 보임 (경정)

1) 처분개요 및 주요 사실관계

- 청구법인은 싱가포르 법인 BBB(이하 "BBB")로부터 ○○○(이하 "○○○") 브랜드의 가족 제품, 의류, 신발 및 액세서리 제품을 수입하여 청구법인의 직매장 및 백화점 내 소매매장을 통해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는 바, 2014~2018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청구법인이 BBB로부터 상품을 매입하는 거래(이하 "쟁점매입거래")에 대해 「국제조

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 제8조 제1항 제2호의 ‘재판매가격방법’을 적용하여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를 제출함

-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2014~2018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매입거래에 대해 적용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및 마케팅비용, 운전자분에 관한 차이 조정 방법은 합리적이거나, 청구법인이 선정한 비교대상법인 및 브랜드가치에 관한 차이 조정 방법은 비합리적이라고 보아 국조법 제7조에 따른 정상가격 과세조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2014 ~ 2018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000원을 경정·고지(이하 “당초 처분”)함
- 감사원은 청구법인이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비교대상법인에 대한 기능분석을 다시 실시한 후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 시 적용했던 브랜드가치 차이조정방법 이외 청구법인과 비교대상법인의 거래 간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재조사 결정(이하 “쟁점결정”)을 함
- 조사청은 이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매입거래에 대하여 재판매가격방법을 적용하되, 청구법인과 비교대상법인 간 매출액 대비 판매 관련 비용(판매수수료를 포함한 판매비 전체 계정, 일반관리비 중 판매인력의 인건비 등)의 비율 차이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정상가격 범위를 재산정한 결과, 2014 ~ 2018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을 환급·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함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함.

2) 쟁점

- 쟁점매입거래에 대하여 국조법 제8조 제1항 제2호의 재판매가격방법을 적용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함에 있어 합리적 차이조정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3) 당사자들의 주장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 주장
<p>1. 이 사건 처분은 재판매가격방법을 적용하되 분석대상법인과 비교대상법인 간의 영업비용의 차이는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는 쟁점결정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그 자체로 위법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쟁점결정은 청구법인과 비교대상법인이 취급하는 제품 자체의 브랜드가치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어렵다면 각각의 수행기능 차이를 매출총이익률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임 - 청구법인과 같이 브랜드가치가 높은 제품을 취급하는 경우 별도 노력이 없어 소매업자의 	<p>1. 이 건 재조사 처분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세무조사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2014~2017 사업연도 평균 영업이익률은 (8.5%)가 국내 경쟁사(17.8%)와 000 영국법인(19%)의 절반에 불과하며, 이는 000 그룹이 상품 가격을 통제하여 한국에 이익이 적게 남도록 구조한 한 것으로 판단함 - 처분청은 비교대상법인에 대한 기능분석을 재수행한 후 재판매가격방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과 비교대상회사 간 판매비관리비 항목의 차이를 조정하고 정상가격 범위를 재산정함. 이에 따라 이전소득 감액조정을 함

<p>수행기능이 제한되며, 이로 인해 판매비, 인건비, 각종 수수료 등의 비용을 적게 발생됨. 따라서 제품의 브랜드 가치 차이는 소매업자의 수행기능 차이로 귀결되며, 통상적으로 재무적 관점에서 그 수행기능 차이는 판매비관리비 차이로 반영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리적으로 차이 조정하기 위해서는 그 차이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재무적 수치인 판관비 세부계정 중 판매기능과 관련된 계정(임차료, 감가상각비, 세금과공과, 소모품비, 수선비)을 모두 조정하는 것이 타당함 - 특히 청구법인의 매출액 대비 영업비용의 비율이 3%인 반면, 비교대상회사인 CCC(주), (주)DDD, (주)EEE는 11~15%로 나타나 청구법인과 비교대상법인 사이의 기능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음을 방증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초 청구법인은 브랜드가치, 마케팅 비용(광고비, 판촉비, 견본비, 접대비) 및 운전자본을 차이 조정하였으며, 1차 세무조사 당시 처분청은 브랜드가치, 마케팅 비용(광고비, 판촉비, 견본비, 접대비, 교육훈련비), 운전자본 및 운반비, 로열티 항목을 차이 조정하여 납세자에게 매우 유리하게 적용되게 함
<p>2. 처분청의 차이 조정 방식은 오로지 수백억원의 세금 추정만을 위해 수행된 매우 자의적인 방식이므로, 그 자체로 위법·부당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구법인의 영업이익률과 공시된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국내의 주요 명품 자회사들의 영업이익률을 비교하면, 처분청의 의견과 달리 청구법인의 영업이익률은 주요 명품 자회사들의 영업이익률 중위값 또는 평균값보다 높은 수준으로 국내 명품 시장에서 충분한 이익을 내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 - 청구법인은 2008년 이후로 사업구조나 쟁점 거래에서 큰 변화 없이 매년 유사한 매출총이익률(28~31%)을 유지했음. 그러나 당초 처분에 따르면 2017 사업연도의 정상가격이 다른 사업연도와 비교해 10% 이상 차이가 나며, 매출총이익률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 대비 10%가 넘는 소득조정이 발생했음. 이 건 처분에 따라 산출된 정상가격이 일관성과 객관성이 부족하고 과세 목적에 맞추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줌 	<p>2. '재판매가격방법' 적용 시 차이 조정은 청구법인과 비교대상법인 거래 간의 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차이에 대하여만 신중하게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고,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비교대상법인의 매출총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을 합리적으로 충분히 조정하였는 바, 청구법인 주장대로 판매비관리비 세부 계정 내역들을 추가 반영하는 것은 사실상 청구법인과 비교대상법인의 영업이익을 비교하는 거래순이익률방법으로 조정하라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판매비관리비 세부 계정 내역(임차료, 감가상각비, 세금과공과, 소모품비, 수선비)을 추가 반영하는 것은 거래순이익률방법으로 조정하는 것이며, 이는 재판매가격방법을 적용하는 조세심판원의 기속력에 위배되어 위법함 <p>차이 조정은 국조법, 국제기준에 따라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항목에만 엄격히 적용해야 하며,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임차료, 감가상각비, 세금과공과, 소모품비, 수선비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판매활동과 직접 관련되지 않아 매출총이익에 중대한 차이를 유발하는 항목으로 보기 어려움</p>

4) 판단

- 처분청은 재조사에서 재판매가격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하면서, 청구법인과 비교대상법인의 브랜드 가치 차이에 따른 판매 기능 조정을 위해 매출액 대비 판매비,

지급수수료, 임차료 비율 차이, 일부 영업직원 인건비 등 영업비용 차이, 운전자본(매출채권, 매입채무, 재고자산) 차이를 조정함에 따라 청구법인과 비교대상회사 간 기능차이가 합리적으로 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 청구법인은 임차료·세금과공과·소모품비·수선비 등에 대한 추가적인 차이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비용 항목은 판매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고 통상의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수행 기능상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영업비용의 수준을 고려함에 있어 통상의 비용을 모두 반영하는 것은 사실상 거래순이익률방법을 택하는 것과 같아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판매비 및 관리비 모든 항목에 대한 추가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다만, 재판매가격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할 때, 청구법인처럼 브랜드 가치가 높은 제품은 특별한 노력 없이 판매가 가능하여 소매업자의 수행기능이 적고, 그로 인해 판매비(광고비 포함)와 홍보·판촉 관련 인건비 등이 적게 발생하여 비교대상회사와의 기능차이로 판관비 차이가 크게 날수 밖에 없음. 특히, 처분청이 인정한 판매 관리 인력(전체의 85.9% 평균)외에도 제품관리, 고객 개발, 마케팅, 온라인 판매 및 전화 응대 직원 등이 판매 관련 인력으로 볼 수 있어, 전체 인력의 95.5%까지 판매 관련 인원으로 포함해 판관비 비율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 함

03 관세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1. 개요

관세청은 민간행정의 효율화를 위해 수입통관 관련 아래 사항에 대해 개정 고시하였습니다.

- ① 서류 제출 대상 및 통관지 세관 제한 등 수입통관 관련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민원인 편의 향상 및 효율적인 기업활동 지원
- ② 일부 물품이 통관 보류되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분할된 물품의 납부세액이 징수금액의 최저한 미만이라도 B/L 분할신고 허용
- ③ 자가사용 인정 기준 등 문구 수정 및 현행 규정을 반영하여 정비
- ④ 외국인이 전자상거래 물품 수입 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하도록 규정

2. 주요 개정사항

1) 서류심사 필요성이 낮은 수입 건은 필수적 서류제출 대상 제외(§13)

- 보세건설장 수입물품은 필수적 서류제출 대상이나, 예외적으로 AEO업체가 수입하는 보세건설장 반입물품 중 분할 신고되지 않는 물품은 필수적 서류제출 대상에서 제외하여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

- 내국세 감면 대상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서류제출 없이도 감면 적용 여부 심사가 가능하므로 필수적 서류제출 대상에서 제외

2) B/L 분할신고 대상 확대 (§16)

- 신고물품 중 일부가 통관이 보류된 경우 등은 분할된 물품의 납부세액이 징수금액 최저한(1만원) 미만인 되는 경우이더라도 B/L 분할신고 허용

3) 자가사용 인정기준 정비 (별표11)

- 개별 법령에 따라 수입이 제한되는 물품은 면세통관 범위 이내이더라도 수입이 제한될 수 있음을 명시
- 담배 등 기호물품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민원인 혼란 방지

4) 외국인의 전자상거래 물품 수입 시 납세의무자 기재사항 정비 (별지 제1호의2서식)

- 외국인의 전자상거래 물품 목록통관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하도록 개정*에 따라, 전자상거래 물품 수입신고시에도 외국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하도록 정비

3. 시사점

AEO업체의 보세건설장 수입물품에 대한 서류제출 제외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서류제출 제외에 따른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이 예상되며, B/L 조건 분할에 따라 행정적인 편의가 증대되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면세통관 범위에 해당하더라도 개별 법령을 재확인하여 법령에서 제한되는 물품의 경우 통관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규정이 완화되는 부분과 심화되는 부분을 명확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이슈 없이 효율적인 통관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고시

1. 개요

관세청은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하여 고시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보세창고 특허요건 완화 및 외국인 운영인의 결격사유 확인방법 구체화 등을 개정하였습니다.

2. 주요 개정사항

1) 고시 적용범위 명확화(고시 제명, 제1조)

- 보세창고의 특허와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고시의 제명을 「보세창고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로 개정하고, 그 적용범위를 '보세창고의 특허와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명확화

2) 외국인 운영인의 결격사유 확인방법 명확화(제5조제1항제1호사목)

- 외국인 운영인에 대한 「관세법」 제175조 적용 관련, 기획재정부 및 법제처 유권해석 결과를 반영하여 아포스티유 확인서 또는 영사확인서류로 본국법에 따른 결격사유를 확인하도록 명시

3) 보세창고 특허요건 완화

- 임차시설의 경우 특허기간을 임대차 기간 이내로 제한하던 것을 신청인이 소유하는 시설의 경우와 같이 10년 이내로 특허할 수 있도록 완화(제6조제4항 신설)

- 자가용 보세창고에만 허용하던 공동보세구역 제도를 영업용 보세창고로 확대(제12조의2 신설)

4) 영업용 보세창고의 고내면적 기준 명확화(제10조제1항제1호)

- 창고면적은 창고 내 화물을 장치하는 바닥의 면적으로 하도록 기준 명확화

3. 시사점

특허보세구역 운영 시 보세창고 특허요건의 완화에 따른 혜택을 검토할 수 있으며, 면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Key Contacts

삼성 KPMG TAX6 본부



강길원 부대표(본부장)

T. 02-2112-0907



백승목 전무

T. 02-2112-0982



김상훈 전무

T. 02-2112-7939



윤용준 상무

T. 02-2112-0277



이영호 상무

T. 02-2112-6763



김태주 전무(관세)

T. 02-2112-7448



오영빈 상무(관세)

T. 02-2112-0435

home.kpmg/socialmedia



home.kpmg/kr/ko/home/services/tax.html

[Privacy](#) | [Legal](#) | [Unsubscribe](#)

27th Floor, Gangnam Finance Center, 152, Teheran-ro, Gangnam-gu, Seoul, Korea

© 2023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registered trademarks or trademarks of KPMG International.